

주거복지센터 상담사(계약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계획 알림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상담사(계약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서류제출

- 제출대상: 원서접수자 전원
- 제출방법: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문의: ☎ 064-780-3514)
- 제출장소: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 ※ 주소: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2층 인사교육팀 (☎ 064-780-3514)
- 제출기간: **2022.03.15.(화) ~ 03.18.(금) 18:00**
 -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분야별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제출서류	비고
<지원자 전원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표기, 주소지 이력 표기) · 도내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자격증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재직당시 수행업무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기간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사실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원분야의 자격요건 확인함

- ※ 사회복지 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용)
- ※ 주거복지 경력: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업무 경력
- ※ 제출서류로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누락 등으로 인한 부적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아 제출

■ 서류전형 계획

- 대상: 원서접수자 전원
- 일시: 2022.03.23.(수)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심사위원이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판정
- 합격자 선정: 자격요건 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역량면접 대상으로 선정)
- 합격자 발표 및 역량면접 계획 알림 공고: 2022.03.25.(금)

■ 전형 일정(예정)

일정	전형일정	비고
03.15.(화) ~ 03.18.(금)	서류제출	
03.23.(수)	서류전형	
03.25.(금)	서류전형 결과 발표	
04.02.(토)	역량면접	
04.05.(화)	역량면접 결과 발표	
04.09.(토)	최종(인성)면접	
04.12.(화)	최종(인성)면접 결과 발표	
04.13.(수) ~ 04.20.(수)	임용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04.25.(월)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형은 제주에서 실시되오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공고 시 확정일정을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대상 역량면접이 진행되오니 사전 예정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 (☎ 064-780-35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붙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